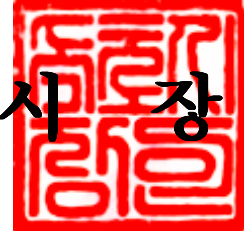


도로명 부여 고시

『도로명주소법』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신설 도로에 대한 도로구간 및 도로명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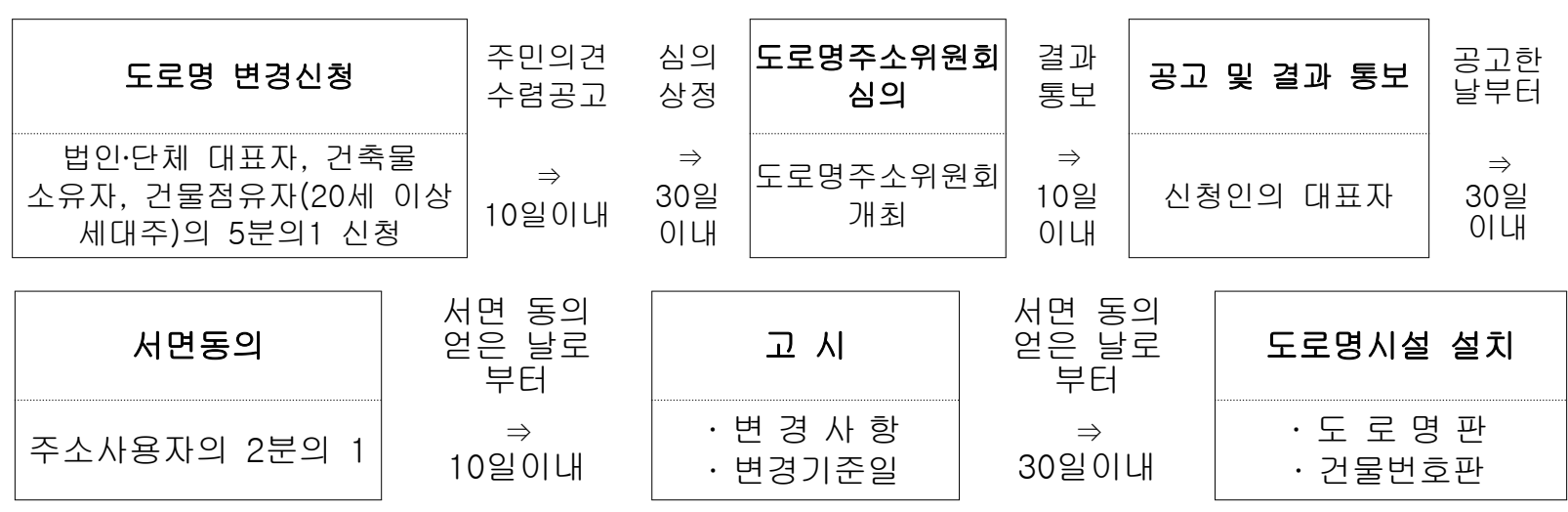
2013년 4월 16일

속 초  장

- 고 시 일 : 2013. 4. 16.
- 고시방법 : 시보, 시 홈페이지, 각 동주민센터 게시판
- 고시내용

일련 번호	도로구간		연장	폭	도로명	도로명 부여사유
	기점	종점				
1	대포동 (남방파제인근)	대포동 958	1350	12	대포항희망길	대포항개발단지 조성에 따른 지역상가 및 어민들의 번영을 희망하여 부여한 도로
2	대포동 (남방파제인근)	대포동 936	951	12	대포항희망1길	대포항희망길의 일련번호 방식 부여

○ 도로명의 변경 요건 및 절차



※ 도로명 변경은 최초 도로명 고시일 3년 경과 후 가능함
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 민원봉사과 새주소공간정보(☎033-639-2041)으
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